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설 명

(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 희 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고령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제척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연구비용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4조에 정책개발 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희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유희순·이철호·김명국·

성원환·김기창·성낙철·나영완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고령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제척과 회피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연구비용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다. 보고서 공개 규정 신설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붙임 1]

고령군조례 제 호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고령군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민간위원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3.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당 등) 고령군의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 “11월 30일”을 “12월 15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없다”를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식정책개발활동”을 “서식의 정책개발활동”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보고서를 고령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정책심의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효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다.</u></p> <p>③ <u>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신 설></u></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고령군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정관련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민간위원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대학교수.</u> 3. <u>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u> 4. <u>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③ <u>위원장과 간사는</u> ----- ----- -----.</p> <p>④ <u>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전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신 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정책개발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신 설>

제9조(정책개발활동 기간)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활동 기간은 정책개발활동비 지원신청 승인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의2(수당 등) 고령군의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책개발활동 기간) -----

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제11조(정책개발활동비의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정책
개발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
외의 정책개발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
용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
한 정책개발비를 회수하거나 조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4. (생략)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의 제출) ① 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정책개발단체는 해당 정책

----- 12월 15일-----
-----.

제11조(정책개발활동비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
야 한다.

⑥ -----

-----.

<삭 제>

<삭 제>

1. 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의 제출) ① -----

개발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
내에 별지 8호 서식정책개발활
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서식의 정책개발
활동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
에 따른 보고서를 고령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 안 설 명

(김명국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 명 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 문화관광 재단 출범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17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및 별표에서는 인사청문에 관련된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명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3. .
발 의 자 : 김명국·이철호·유희순·
성원환·김기창·성낙철·나영완의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17조)
다.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준비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청문 요청서와 별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4. 별지 제6호서식의 세금납부 및 체납 현황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별지 제8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7.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 ① 의장은 군수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서면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

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 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04. 23.(수) 10:00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김명국 의원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 다. 인사청문의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와 제12조)
-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4조와 제15조)
- 사.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준용 등(안 제16조~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나. 조례안 예고 (2025.04.12.~ 2025.04.19.)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p><제정예정안></p> <p>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p> <p>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p> <p>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p>	
고령군수	<p><수정요청안></p> <p>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p> <p>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p> <p><삭제>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 미반영사유 :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원안 반영</p>	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청문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의 참여 유도 및 알 권리 제공 등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 결과 또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인사청문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안 설 명

- ①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총 무 과)

총무과장 조 백 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법정리에 걸쳐있는 주택단지 조성부지를 단일 법정리로
경계 조정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가야읍 고아리·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계 변경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3필지(106-2, 109, 113-4)를 장기리로 편입하여 주택단지의 법정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림면 신곡 1·2리 경계변경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해 오던 신곡1·2리의 경계와 현행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 경계가 달라, 이에 대해 주민들이 행정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곡 1리 527번지 등 108필지를 신곡 2리로 편입하여 관할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가야읍 고아리·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가 장기리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리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종래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를 대가야읍 장기리로 편입됨을 반영하여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총 무 과 장 조 백 섭

□ 대가야읍 고아리 · 장기리

○ 조정내역

읍·면	조 정 전				조 정 후			
	법정리명	지번	지목	타 리로 이동면적 (㎡)	법정리명	지번	지목	타 리에서 편입면적 (㎡)
	계	3필지		942		3필지		942
대가야읍	고아리	106-2	답	274	장기리	258-9	답	274
	고아리	109	답	509	장기리	258-10	답	509
	고아리	113-4	답	159	장기리	259-8	답	159

○ 관할구역

현 행				조 정			
읍면	리	반	구 역	읍면	리	반	구 역
대 가 야 읍	장거리	1	15, 31, 32, 34, 36, 37, 39, 50, 68, 69, 72	대 가 야 읍	장거리	1	15, 31, 32, 34, 36, 37, 39, 50, 68, 69, 72
		2	7, 10, 12, 15-1, 18, 21, 101, 105, 121			2	7, 10, 12, 15-1, 18, 21, 101, 105, 121
		3	109, 120, 142, 150, 152, 153, 204, 206, 213, 214, 228, 238			3	109, 120, 142, 150, 152, 153, 204, 206, 213, 214, 228, 238, 258-9, 258-10, 259-8 (스카이뷰 203동 101~1502호 스카이뷰 301동 101~1503호 302동 101~1504호)
		4	92, 100, 242, 244, 248, 280, 284, 293, 303, 313			4	92, 100, 242, 244, 248, 280, 284, 293, 303, 313
		5	372, 394, 441, 445, 450, 457, 460, 467			5	372, 394, 441, 445, 450, 457, 460, 467
		6	357, 364, 365, 389, 390, 394, 532, 533, 545, 547			6	357, 364, 365, 389, 390, 394, 532, 533, 545, 547

○ 위치도

< 조정 前 >



< 조정 後 >



□ 쌍림면 신곡 1리 · 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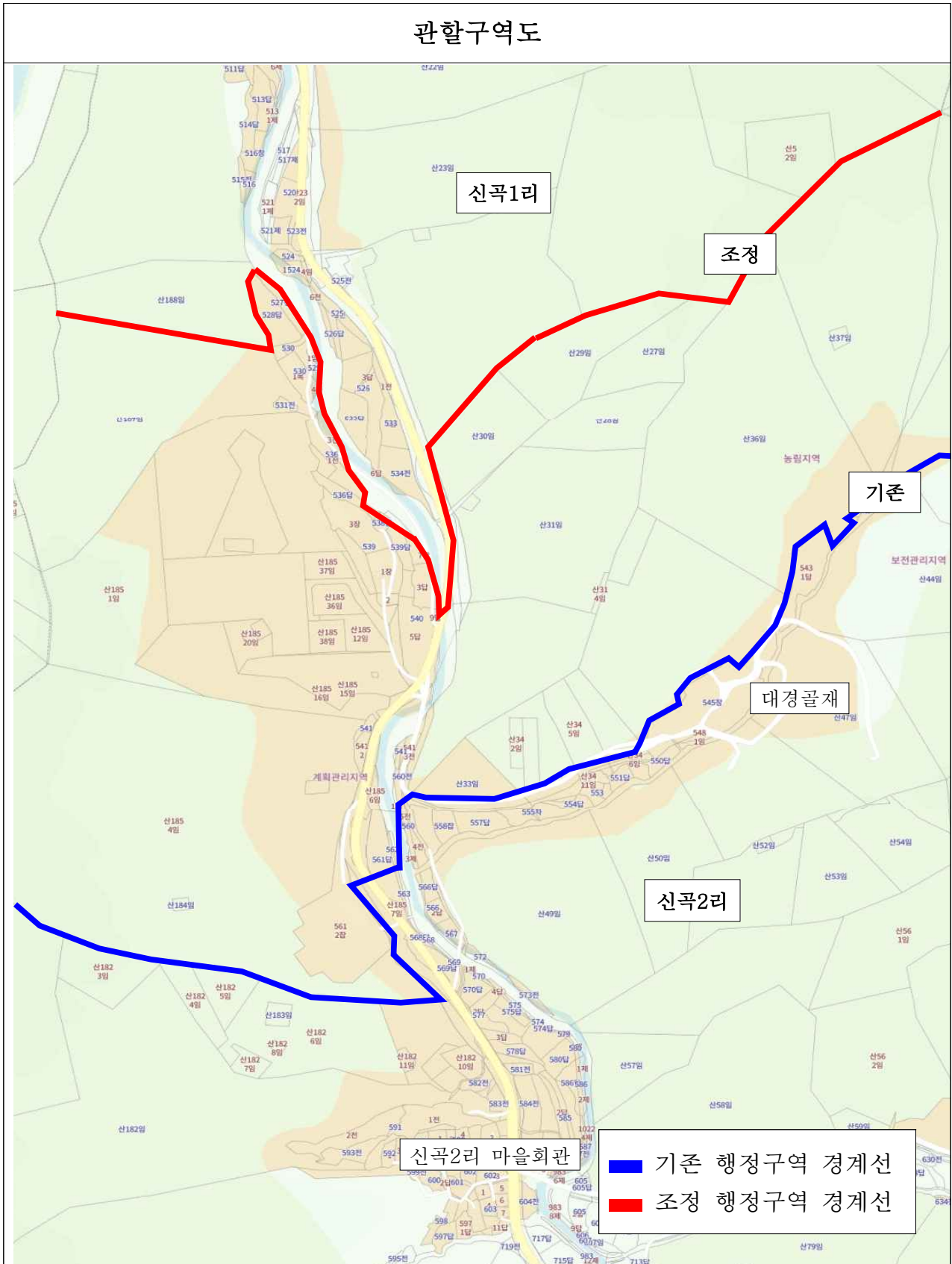
○ 조정내역

읍·면	현 행			조 정			증·감		비고
	행정리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	세대수	인구수	리	반	
쌍림면	신곡1리	101	159	신곡1리	98	155	-	-	
	신곡2리	69	103	신곡2리	72	107			

○ 관할구역

현 행				조 정			
읍면	리	반	구 역	읍면	리	반	구 역
쌍림면	신곡1리	1	145, 148, 152, 169, 171, 191	쌍림면	신곡1리	1	145, 148, 152, 169, 171, 191
		2	174, 173, 180, 180, 195, 205, 208			2	174, 173, 180, 180, 195, 205, 208
		3	147, 159, 200, 201, 446, 486			3	147, 159, 200, 201, 446, 486
		4	437, 438, 441, 446, 449, 456			4	437, 438, 441, 446, 449, 456,
	신곡2리	1	591, 607, 667, 678, 684, 690	신곡2리	1	541, 591, 607, 667, 678, 684, 690	
		2	639, 642, 645, 687		2	639, 642, 645, 687	
		3	892, 896, 899, 902		3	892, 896, 899, 902	

○ 위치도



□ 행정구역 조정 절차

절 차	주무부서
①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	읍·면
② 주민 및 군의회 의원 의견 수렴	읍·면
③ 행정구역 조정 건의(읍·면⇒총무과)	읍·면
④ 현지 답사 및 타당성 분석	총무과
⑤ 관련부서 협의(총무과⇔민원과)	총무과
⑥ 조정 계획 수립	총무과
⑦ 조례 개정 및 공포(입법예고 : 20일 이상)	총무과
⑧ 개정사항 도 보고	총무과
⑨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공부 정리	관계기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조정내역

읍·면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법정리	지 번	면적(m ²)	법정리	지 번	면적(m ²)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	942	장기리	258-9번지 등 3필지	942
쌍림면	신곡1리	527번지 등 108필지	917,009	신곡2리	527번지 등 108필지	917,009

- 세부내역 : 붙임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예산조치 불필요)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03.18.~2025.04.08.(특이사항 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행정구역 조정 지번별 조서

○ 대가야읍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총면적 (㎡)	이동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계		3필지				942	942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06	2	답	274	274	장기리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09	0	답	509	509	장기리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13	4	답	159	159	장기리

○ 쌍림면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총면적 (㎡)	이동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계		108필지				917,009	917,009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7	0	전	1,081	1,08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8	0	답	3,236	3,23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9	1	임	380	38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9	2	목	115	11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9	3	목	158	158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29	4	목	52	5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0	0	대	564	56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0	1	목	1,843	1,84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0	2	답	554	55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0	3	대	90	9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1	0	전	374	37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6	0	답	1,455	1,45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6	1	전	2,379	2,379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6	2	답	674	67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6	3	전	1,439	1,439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8	0	답	512	51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9	0	답	1,273	1,27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9	1	장	2,637	2,63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9	2	대	498	498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39	3	장	4,106	4,10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1	도	777	77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3	답	1,633	1,63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4	답	665	66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5	답	4,671	4,671	신곡2리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총면적 (㎡)	이동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7	답	91	9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8	답	281	28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0	9	답	110	11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1	0	대	448	448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1	1	임	110	11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1	2	대	763	76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1	6	도	925	92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1	2	잡	13,514	13,51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4	임	182,667	182,66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8	도	1,052	1,05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0	도	522	52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2	임	2,857	2,85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4	임	72	7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5	임	55	5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7	임	1,444	1,44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8	임	9,233	9,23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19	임	1,011	1,01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20	임	312	31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25	임	475	47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28	임	1,452	1,45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3	임	33,966	33,96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4	임	17,659	17,659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6	임	2,617	2,61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7	임	2,400	2,40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8	임	2,302	2,30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39	임	2,424	2,42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5	40	임	20,516	20,51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187	0	임	68,231	68,23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27	0	임	12,694	12,69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28	0	임	11,901	11,90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29	0	임	16,661	16,66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0	0	임	14,364	14,36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1	0	임	44,497	44,49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1	3	임	315	31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1	4	임	465	46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2	1	임	30,905	30,905	신곡2리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총면적 (㎡)	이동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3	0	임	9,060	9,06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1	임	9,331	9,33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2	임	1,322	1,32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3	임	2,149	2,149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4	임	165	16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5	임	5,818	5,818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2리	산34	6	임	356	35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3리	산34	7	임	158	158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8	임	715	71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9	임	94	9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10	임	293	29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11	임	67	6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4	12	임	133	13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5	0	임	47,096	47,09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5	4	임	3,300	3,30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6	0	임	86,876	86,87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7	0	임	595	59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8	0	임	68,231	68,23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9	0	임	28,165	28,16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40	0	임	397	39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41	0	임	89,256	89,25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3	1	임	1,100	1,10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산33	2	임	551	55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1020	0	도	836	83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0	전	130	13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1	제	157	15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2	제	6	6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3	제	44	44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4	전	607	60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60	5	전	1,003	1,00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9	0	전	1,507	1,50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8	0	잡	1,210	1,21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7	0	답	1,957	1,95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6	0	차	833	83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5	0	차	150	15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5	1	답	1,123	1,123	신곡2리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총면적 (㎡)	이동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4	0	답	717	71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3	1	답	707	70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3	2	답	291	291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2	0	임	347	347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1	0	답	760	76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1	1	답	572	572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50	0	답	893	89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8	0	답	195	195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8	1	임	380	380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5	0	장	11,979	11,979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3	1	답	4,513	4,513	신곡2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1리	542	0	임	387	387	신곡2리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4조 관련)

반 의 명 칭 및 구 역 표

읍면별	리 명	분 리	반 의 명 칭
대가야	장 기	장기 1	1반 15, 31, 32, 34, 36, 37, 39, 50, 68, 69, 72 2반 7, 10, 12, 15-1, 18, 21, 101, 105, 121 109, 120, 142, 150, 152, 153, 204, 206, 213, 214, 228, 238, 258-9, 258-10, 259-8 3반 (스카이뷰 203동 101~1502호 스카이뷰 301동 101~1503호 스카이뷰 302동 101~1504호) 4반 92, 100, 242, 244, 248, 280, 284, 293, 303, 313 5반 372, 394, 441, 445, 450, 457, 460, 467 6반 357, 364, 365, 389, 390, 394, 532, 533, 545, 547
쌍 립	신 곡	신곡 1	1반 145, 148, 152, 169, 171, 191 2반 174, 173, 180, 180, 195, 205, 208 3반 147, 159, 200, 201, 446, 486 4반 437, 438, 441, 446, 449, 456
		신곡 2	1반 541, 591, 607, 667, 678, 684, 690 2반 639, 642, 645, 687 3반 892, 896, 899, 90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총무과	
연 락 처	(054) 950-6073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종래 고아리 106-2번지 외 2필지(942㎡)를 대가야읍 장기리로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읍·면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법정리	지 번	면적(㎡)	법정리	지 번	면적(㎡)
	계	3필지	942		3필지	942
대가야읍	고아리	106-2	274	장기리	258-9	274
	고아리	109	509	장기리	258-10	509
	고아리	113-4	159	장기리	259-8	159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제7조제2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고령군 반 설치 조례」
-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예산조치 불필요)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03.18.~2025.04.08.(특이사항 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대 가 야 읍	쾌 빈 리	종래 쾌빈리 일원
	고 아 리	종래 고아리 일원 (종래 대가야읍 고아리 중 106-2, 109, 113-4를 제외)
	현 문 리	종래 현문리 일원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종래 대가야읍 고아리 중 106-2, 109, 113-4를 포함)
	연 조 리	종래 연조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본 관 리	종래 본관리 일원
	중 화 리	종래 중화리 일원
	저 전 리	종래 저전리 일원
	내 상 리	종래 내상리 일원
	신 리	종래 신 리 일원
	외 리	종래 외 리 일원
	내 곡 리	종래 내곡리 일원
덕 곡 면	가 룬 리	종래 가룬리 일원
	원 송 리	종래 원송리 일원
	노 리	종래 노 리 일원
	백 리	종래 백 리 일원
	옥 계 리	종래 옥계리 일원
	용 흥 리	종래 용흥리 일원
	본 리	종래 본리리 일원
	예 리	종래 예 리 일원
	반 성 리	종래 반성리 일원
	후 암 리	종래 후암리 일원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운 수 면	봉 평 리	종래 봉평리 일원
	대 평 리	종래 대평리 일원
	신 간 리	종래 신간리 일원
	법 리	종래 법 리 일원
	유 리	종래 유 리 일원
	팔 산 리	종래 팔산리 일원
	운 산 리	종래 운산리 일원
	월 산 리	종래 월산리 일원
	화 암 리	종래 화암리 일원
성 산 면	어 곡 리	종래 어곡리 일원
	득 성 리	종래 득성리 일원
	삼 대 리	종래 삼대리 일원
	오 곡 리	종래 오곡리 일원
	강 정 리	종래 강정리 일원
		종래 무계리 일원
	무 계 리	(종래 성산면 무계리 중 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 ,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 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 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 668,669,670,671,672,673,674를 제외) 종래 박곡리 일원
	박 곡 리	(종래 성산면 무계리 중 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 ,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 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 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 668,669,670,671,672,673,674를 포함)
	대 흥 리	종래 대흥리 일원
	용 소 리	종래 용소리 일원
	상 용 리	종래 상용리 일원
	고 탄 리	종래 고탄리 일원
	기 족 리	종래 기족리 일원
기 산 리	종래 기산리 일원	
사 부 리	종래 사부리 일원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다 산 면	평 리 리	종래 평리리 일원
	호 촌 리	종래 호촌리 일원
	곽 촌 리	종래 곽촌리 일원
	상 곡 리	종래 상곡리 일원
	좌 학 리	종래 좌학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리 일원
	노 곡 리	종래 노곡리 일원
	나 정 리	종래 나정리 일원
	별 지 리	종래 별지리 일원
	송 곡 리	종래 송곡리 일원
개 진 면	양 전 리	종래 양전리 일원
	반 운 리	종래 반운리 일원
	신 안 리	종래 신안리 일원
	직 리	종래 직 리 일원
	개 포 리	종래 개포리 일원
	오 사 리	종래 오사리 일원
	구 곡 리	종래 구곡리 일원
	옥 산 리	종래 옥산리 일원
	부 리	종래 부 리 일원
	생 리	종래 생 리 일원
인 안 리	종래 인안리 일원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우 곡 면	도진리	종래 도진리 일원
	예곡리	종래 예곡리 일원
	답곡리	종래 답곡리 일원
	봉산리	종래 봉산리 일원
	포리	종래 포리 일원 (종래 우곡면 객기리 중 78-1, 78-2, 1, 2-1, 3-1, 4-1, 5-3, 5-4, 6-1, 7-1, 8-1, 9-2, 9-3, 10-2, 10-3, 11-2, 613-1)
	객기리	종래 객기리 일원 (종래 우곡면 포리 중 474-7, 474-8, 474-9, 474-10, 475-2, 476, 477, 477-1, 477-2, 477-3, 478-2, 478-4, 478-5, 478-6, 478-7, 479-2, 479-4, 480-2, 953-13)
	연리	종래 연리 일원
	월오리	종래 월오리 일원
	대곡리	종래 대곡리 일원
	산전리	종래 산전리 일원
	야정리	종래 야정리 일원
	속리	종래 속리 일원
	사촌리	종래 사촌리 일원
	쌍 립 면	귀원리
송림리		종래 송림리 일원
산당리		종래 산당리 일원
백산리		종래 백산리 일원
하거리		종래 하거리 일원
신촌리		종래 신촌리 일원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산 주 리	종래 산주리 일원
	매 촌 리	종래 매촌리 일원
	합 가 리	종래 합가리 일원
	신 곡 리	종래 신곡리 일원
	평 지 리	종래 평지리 일원
	안 화 리	종래 안화리 일원
	안 림 리	종래 안림리 일원
	고 곡 리	종래 고곡리 일원
	월 막 리	종래 월막리 일원
	용 리	종래 용 리 일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총무과	
연 락 처	(054) 950-6073



제 안 설 명

○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 령 군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 현 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고령군 가족센터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가족성장을 위한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위탁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에 관한 업무
둘째, 장난감 도서관 운영(현 다산행정복합타운 내)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사업
셋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가족센터 지침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 예산은

2026년 가족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 7월부터 위탁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비 30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연간 총 502백만원 정도이며,
국비 222백만원, 도비 73백만원 , 군비 207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둘째, 지역 중심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인 가족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월 일

가족행복과장 박 현 수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가족행복과장)
연 월 일	2025. . .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안이유

- 가.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 동의 받기 함
- 나.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군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정/현원)	운영방법	지원시설
고령군 가족센터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3,757㎡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 공동육아나눔터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가족센터 사업운영 및 관리전반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

다. 민간위탁 예산

○ 2025년 예산액

구 분	예 산(천원)	내 역	비 고
합 계	30,000		
민간위탁 운영	30,000	· 센터장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월급(4,169,800) + 명절수당(60%) + 사간외 근무시간 10시간/ 6개월	군비 100%

○ 2026년 예산액

구 분	예 산(천원)	내 역	비 고
합 계	502,000		
가족센터(마형)	275,000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 국50% 도15% 군35%
별도지원사업	227,000	·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봄사업 등	- 도 20%, 군 80% - 국70% 도9% 군21%

※ 2025년도 가족센터 지침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기존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통해 전문인력과 능력이 갖춰진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 필요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연속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효율성 증대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5. 참고사항

가.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규 : 붙임 참조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 고령군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 목적 및 필요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족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민간위탁 대상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정/현원)	운영방법	지원시설
고령군 가족센터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3,757㎡	민간위탁	· 가족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 공동육아나눔터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명 :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사무 내용

- 고령군 가족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업무전반
-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사업
 (가족관계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등
 가족돌봄 :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5. 민간위탁 예산

○ 예산액: 502,000천원 (2025년도 지침 기준)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계	502,000	221,500	73,450	207,050	
가족센터운영팀	275,000	137,500	41,250	96,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가족통합지원팀	227,000	84,000	32,200	110,800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봄사업 운영 등

※ 2025년 예산액 : 30,000천원 (1회추경 시 예산 반영)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민간위탁 기대효과

-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효율적 운영활성화를 도모
-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가족센터 서비스 제고
-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첨 부 1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5. 19.>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2. 1.]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고령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안) 대비표

■ 현재 운영

1. 운영인원

구분	인원(명)
총 원	11
1. 다문화가족센터	7
2. 장난감도서관	2
3. 아이돌봄사업	2

2. 민간위탁 운영주체

구분	주체
1. 다문화가족센터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2. 장난감도서관	
3. 아이돌봄사업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3. 예산

구분	예산액(백만원)
총예산	402
1. 다문화가족센터	175 (국 50%, 도 15%, 군 35%)
2. 장난감도서관	120 (도 20%, 군 80%)
3. 아이돌봄사업	107 (국 70%, 도 9%, 군 21%)

4. 선정방식

- 해당사항 없음

■ 가족센터 위탁 후

1. 운영인원 (증1명 [센터장 1])

구분	세부구분	인원(명)
	총 원	12
가족센터	센터장	1 (신규채용)
	다문화가족센터	7
	가족통합지원팀	4 ※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봄지원사업

2. 민간위탁 운영주체

구분	주체
1. 다문화가족센터	가족센터
2. 장난감도서관	
3. 아이돌봄사업	

3. 예산

구분	세부구분	예산액(백만원)	
	총예산	502 (증감 100)	
가족센터	가족센터운영팀	275 (증감 100) (국 50%, 도 15%, 군 35%) - 센터장(1명) 신규 채용 - 가족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가족통합지원팀	장난감도서관	120 (증감0) (도 20% 군 80%)
		아이돌봄사업	107 (증감0) (국 70% 도 9% 군 21%)

4.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선정





제 안 설 명

-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재 무 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5년 6월 30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제·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 조문 및 그 밖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하여,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 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안 제9조에 “법 제71조제2항” 을
“법 제71조제1항” 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5급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제한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고,
-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의 적정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7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4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재무과장 배 영 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5 .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5 .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군세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을 정비하고, 국가유산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상북도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자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기한 3년 연장
- 2025년 6월 30일 → 2028년 6월 30일

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4조)

- 국가유산 체제전환으로 인해 경상북도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그 밖의 조문정비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다.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9조)

○ 법 제71조제2항 → 법 제71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7. 기 타

가. 법제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3.18.~2025.4.7.(의견 없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율”을 “먼저 감면율”로,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2023. 12. 29.>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개정 2024. 12. 3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2023. 3. 14.>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2023. 3. 14.>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삭제 <2016. 12. 27.>

⑤ 삭제 <2016. 12. 27.>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2024-07-11 조례 제 5090호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정) 2024-07-11 조례 제 5091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연 락 처	054-950-6121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개선(안 제2조)

- 관리자급(5급, 과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안 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예산편성 운

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 예산 관련 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3. 18.~ 4. 7.(의견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마. 법제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4급”을 “5급”으로, “공무원 대하여는”를 “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으로”를 “실과소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u>공무원</u>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5급 ----- <u>공무원에 대하여는</u>----- -----. ----- ----- ----- --.</p>
<p>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u>실과소장으로</u> 한다.</p>	<p>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실과소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u> -----.</p>
<p>④·⑤ (생략)</p> <p>제6조(대장비치) ① (생략)</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대장비치) (현행 제1항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연 락 처	054-950-6141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5 .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10호)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예산 관련 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3. 18.~ 4. 7.(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마. 법제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본·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연 락 처	054-950-614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04. 23.(수) 10:00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조성원칙(안 제3조와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마. 정책연구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7조와 제8조)
- 바. 홍보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9조와 제10조)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

5. 검토의견

-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었으며,
-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부터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이며, 지역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지자체별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청년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 제정시 우리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 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① 법 제24조의 6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 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에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제 안 설 명

-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 령 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 중 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주거 기반 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입물량은 총 30호로 청년형 50%, 신혼부부형 50%입니다.

사업비는 총 6,500백만원으로 국비 1,600백만원, 도비 1,50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백만원, 경북개발공사 1,900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3월 18일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의 효력은 군 의회 의결 후 발생하며,
사업자 매입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후
2027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 청년친화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다음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할 때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인구정책실장 권 중 수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인구정책실장)
제출 연월일	2025. . .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안이유

-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으로 지역정주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업무협약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사업명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위치	고령군 대가야읍 일원
매입물량	30호
공급유형	청년형 50% / 신혼부부형 50%
매입유형	민간매입약정형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하여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약정 체결)
사업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시행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주택매입	매입공고는 2025년 실시, 매입공고 전 세부사항은 고령군과 협의
임대운영	임대의무기간 20년
사업비	총 6,5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1,500 기금 1,500 공사 1,900)
소유 및 관리	경상북도개발공사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협약의 효력	고령군의회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3.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 일 시 : 2025. 3. 18.(화) 16:00
- 장 소 : 고령군청 가야금방
- 협약기관 : 고령군 - 경상북도개발공사
- 참 석
 - (고령군) 군수, 인구정책실장, 지역경제실장, 건축과장
 - (개발공사) 사장, 판매고객처장, 노조위원장, 판매고객처 차장
- 내 용 : 매입임대주택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효력발생 : 군의회 의결 후

4. 향후계획

- 2025. 04. : 약정매입 공고
- 2025. 07. : 민간사업자 선정
- 2025. 하반기 : 매입약정체결
- 2027. 상반기 : 공사준공, 사업비 정산 등

※ 첨부 업무협약서 1부. 끝.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고령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이하 “공사” 이라 함] 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이하 “본 사업” 이라 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근로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임대주택사업’ 이라 함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민간매입 약정형’ 이라 함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총 사업비’ 라 함은 최종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한 주택매입에 소요되는 약정체결 금액,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취·등록세, 공과금 등), 각종 수수료(1~2차 감정평가, 법무사 등) 등 ‘본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4. ‘국가보조금’ 이라 함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단 연도별, 공급유형별 국가보조금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사 업 명 :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 ②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읍 지역] 일원
- ③ 매입물량 : 30호 내외
- ④ 공급유형 : 청년형 50%, 신혼부부형 50% 내외
- ⑤ 매입유형 : 민간매입 약정형
- ⑥ 사업내용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 ⑦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사업개요는 추진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제4조 (업무분담) ① ‘고령군’과 ‘공사’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한다.

1. ‘고령군’의 역할 및 업무

- 가. 매입신청 물건에 대한 평가 및 심의 검토
- 나. ‘본 사업’에 대한 매입대상주택 선정업무 지원 및 승인
- 다.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
- 라. 관련기준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지원 및 모집홍보
- 마. 기타 ‘고령군’과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2. ‘공사’의 역할 및 업무

- 가. ‘본 사업’에 대한 사전공고, 매입공고, 매입신청 물건에 대한 평가업무, 약정계약 체결, 품질점검, 소유권이전 등 주택매입 업무 총괄 수행
- 나. ‘본 사업’에 대한 매입대상주택 선정업무
- 다. ‘본 사업’에 대한 수시 및 정기 보고(사업비 정산 포함)
- 라. ‘본 사업’에 의해 매입된 주택에 대한 임대공급, 운영·관리

② 제①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업무수행 명의 및 책임) 다음 각 항의 업무는 ‘공사’ 단독명의로 수행한다.

- ① ‘본 사업’에 대한 사전공고, 매입공고, 약정계약 체결, 품질점검 등 주택매입 업무
- ② 제①항에 의해 매입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제6조 (주택매입) ① ‘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매입공고를 2025년 실시하며, 매입공고 전 세부사항은 ‘고령군’과 협의한다.

② ‘본 사업’은 2025년 매입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물량이 현저하게 충족하지 않은 경우

나. 매입공고 후 매입신청 물건 접수가 없는 경우

다. 매입신청 물건 평가결과 매입에 적합한 물건이 없는 경우

라. 기타사항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경우

제7조 (임대운영) ① ‘본 사업’에 의해 매입한 주택의 임대유기기간은 20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포함되어 주택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철거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경우

다. 하자보수 등 유지비용이 과다한 경우

라. 매입한 주택의 입주공실이 50% 이상 12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마. 기타사항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경우

②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 임대료 산정, 재계약 등 임대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기준을 따른다.

제8조 (사업추진 알림) ‘공사’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령군’에 통지한다.

① 매입공고 후 매입신청 접수결과

② 매입대상주택 민간매입약정 계약체결 사항

③ 매입대상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④ 주택매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제9조 (사업비 부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비용 일체를 총사업비라 하며, ‘공사’와 ‘고령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담한다.

- ① ‘공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자원(국고보조금 포함)을 부담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자원은 202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국토교통부)을 따른다.
- ② ‘고령군’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자원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커뮤니티시설에 투입된 토지 매입금액(주거 및 커뮤니티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이 고령군 부담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토지 초과분에 대해 공사와 고령군이 협의를 거쳐 부담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고령군 부담금) ① ‘고령군’은 총 사업비 중 제9조에 따라 ‘고령군’과 ‘공사’가 상호 협의된 금액을 ‘고령군’ 부담금으로 한다.

② ‘고령군’ 부담금은 상호 협의된 금액을 바탕으로 ‘고령군’이 별도예산 확보하여, 총 2차에 걸쳐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한 내 지급한다.

가. 1차 부담금 : ‘본 사업’에 대한 민간매입약정 계약체결 후 ‘공사’에서 부담금 지급요청 시 ‘고령군’은 3개월 이내에 부담 예정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1차 부담금 규모는 ‘고령군’과 ‘공사’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 정할 수 있다.)

나. 2차 부담금 : ‘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에서 부담금 지급요청 시 ‘고령군’은 3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중 ‘고령군’ 부담금의 1차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단 지급시기 조정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④ ‘본 사업’ 추진 중 민간매입약정 계약해제·해지 발생 시 ‘공사’는 ‘고령군’에 즉시 통보하고 기 지급받은 부담금을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고령군’에 반환해야 한다.(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때 ‘고령군’에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지급 받은 부담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토록 한다.

제11조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의해 매입한 주택, 커뮤니티 및 기타시설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중 주택은 ‘공사’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③ ‘본 사업’ 중 ‘공사’ 커뮤니티시설은 ‘공사’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고, ‘고령군’ 수요에 따라 건립된 커뮤니티시설은 ‘고령군’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고령군’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다만,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와 ‘고령군’이 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부담토록 한다.

제12조 (협의조정 및 상호협력)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②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1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비밀의 유지) 협약당사자는 협약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는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15조 (협약해제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사정으로 ‘고령군’과 ‘공사’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② 양 기관은 본 협약 내용대로 각자 역할 및 업무와 사업비 부담을 성실히 이행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일방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직인 날인 후 고령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고령군’은 매입공고 전까지 고령군의회 의결 결과에 대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3월 18일



고령군

군수 이남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인구정책실	
연 락 처	054-950-6253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인구정책실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
-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상향

2. 주요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변경(별표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80%;">지급기준</th> <th style="width: 2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입 후 3개월 경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4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입 후 3년 경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1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4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50만원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1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4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50만원									
지원기준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p>예시) 2025년 1월 1일 전입신고 시 신청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이후 첫 지급(10만원) - 2026년 7월 이후(40만원) 지급 - 2028년 1월 이후(50만원) 지급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나.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2.6.~ 2025.2.26.(의견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별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지원금은 전입 또는 국적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지급한다.</p> <p>③ 제1항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 제4항과 같음)</p>

【별표】

지원금 세부 기준(제4조 관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비고								
1. 전입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0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급기준</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전입 후 3개월 경과</td> <td>10만원</td> </tr> <tr> <td>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td> <td>40만원</td> </tr> <tr> <td>전입 후 3년 경과</td> <td>50만원</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1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4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p>예시) 2025년 1월 1일 전입신고 시 신청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이후 첫 지급(10만원) - 2026년 7월 이후(40만원) 지급 - 2028년 1월 이후(50만원) 지급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1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4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50만원										
2. 국적취득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취득 지원금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입 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연 200만원 한도 최대 2년 (2자녀 이상) 연 400만원 한도 최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2인 이상 세대구성으로 전입하여 주택 대출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전입학생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학생 1인당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전입 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 									
6.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급기준</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3명 ~ 5명</td> <td>50만원</td> </tr> <tr> <td>6명 ~ 10명</td> <td>70만원</td> </tr> <tr> <td>11명 ~</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 지급일 기준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초 1회만 지급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금 증액 및 신설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천 원)		비고
		현행	개정(안)	
전입자	전입장려금	100	1,000	증 900천원 (최대조건) - 3개월 후 10만원 - 1년 6개월 후 40만원 - 3년 후 50만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입장려금 지원 실적

- 2023년 : 467명 × 100,000원 = 46,700,000원
- 2024년 : 706명 × 100,000원 = 70,600,000원
- 2년간 평균 : 586명 × 100,000원 = 58,600,000원

○ 전입장려금 지원금 증액 후 예상

- 예상 전입 인원 : 연간 500명
- 예상 지원 금액 : 연간 125,000,000원
- 산출내역
 - 500명 × 100,000원 = 50,000,000원 (전입 후 3개월)
 - 500명 × 25% × 400,000원 = 50,000,000원 (전입 후 1년 6개월)
 - 500명 × 10% × 500,000원 = 25,000,000원 (전입 후 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전입장려금	50,000	100,000	125,000	125,000	125,000	525,000
증 감	-	50,000	25,000	-	-	

4.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준비

5. 부대의견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525,000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6. 작성자 : 행정7급 전규리 (054-950-6252)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인구정책실	
연 락 처	054-950-6252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인구정책실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수의 책무 및 조성원칙(안 제3조와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마. 정책연구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7조와 제8조)
- 바. 홍보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9조와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 2. 3. ~ 2025. 2. 24.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령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① 법 제24조의 6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인구정책실	
연 락 처	054-950-6589



제 안 설 명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 령 군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최용석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10만원, 5만원, 1만원, 3천원, 1천원에서 신규로 5천원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천원권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중인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사업 완료 후 관광객이 1만원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시에 고령사랑상품권 5,000원을 환급하여 전통시장,
식당, 마트 등에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지역경제실장 최 용 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지역경제실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고령사랑상품권의 다양한 권종의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소액 상품권 제작

2. 주요내용

○ 상품권의 종류 5천원 추가(안 제4조)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 1. 17. ~ 2025. 2. 6.(의견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규제사항 해당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 가결(2025. 3. 4.)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천원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생략)</p> <p>② 고령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3. ~ 5.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5천원권</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경제실	
연 락 처	054)950 - 6563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04. 23.(수) 10:00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대가야 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 ~ 3조)
-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1조)
- 다. 환불 및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 14조)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목원 내 야간경관 시설의 준공에 앞서, 기존 무료로 운영하던 수목원의 야간 운영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수목원의 주·야간 운영시간, 입장료, 입장료의 환급 및 감면 사항 등 수목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위 조례안 제정으로 수목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경관 시설의 입장료 환급 및 감면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고령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사항은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고령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3천원권<신설 2024.12.26.>
3. 1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2호와 같음)>
4. 5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3호와 같음)>
5. 10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4호와 같음)>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안 설명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 대가야 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명칭,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 정하였으며,
- 안 제4~5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그 주체와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여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대가야 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제8조는 시설 운영의 운영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가야 수목원의 하절기·동절기에 따른 운영시간과 무료·유료 및 할인 입장에 관한 상세사항을 담고 있으며

- 안 제9조~제10조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장객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시설 파괴나 폭언폭행, 주취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11조~제14조에는 환불 및 변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관광진흥과장 이 선 희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관광진흥과장)
제출연월일	2025. 4. .

법무팀 심사필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정이유

- 대가야 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에 기반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 ~ 3조)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11조)
- 환불 및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2 ~ 14조)

3. 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25. 1. 24.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5. 2. 18. ~ 25. 3. 10. (의견없음)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대가야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대가야 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경관 시설”이란 수목원 내부의 야간경관을 위해 구축한 투자 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매표소에서부터 출구까지의 수목원 동선상 존재하는 야간경관 조명 및 조형물 등을 말하며, 목재데크, 교각, 건축물 등 수목원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군민”이란 현재 고령군을 주민등록 주소로 3개월 이상 둔 자를 말한다.

5. “영유아”란 3세(3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6. “어린이”란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 “고령사랑 상품권”이란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경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야간경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방 및 입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고 휴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긴급한 점검 및 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③ 수목원 주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9월) : 09:00 ~ 18:00

2. 동절기(10월~3월) : 09:00 ~ 17:00

④ 수목원 야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2. 동절기(10월~3월) : 17:00 ~ 22:00

⑤ 수목원의 주간 운영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장료 및 환급) ① 주간운영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야간운영 입장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야간운영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및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운영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일반 구매자에게는 5천원, 제8조제2항에 따른 할인 구매자에게는 3천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교부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⑥ 입장권은 그날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⑦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령군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으며, 무료 입장객에게는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1. 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제3조에 따른 영유아
3. 당일 관내에서 소비한 1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소지한 자. 단 소지자가 영수한 금액이 2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 당 1명씩 동행자 추가 무료 입장 가능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 이내에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어린이
2.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취객 또는 주류를 소지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지닌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을 시도한 자
5.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퇴장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

1. 음주행위가 발각된 자
2. 안내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
3.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
4. 내부시설을 파손하는 자
5. 폭행 및 폭언을 하는 자

제11조(안내사항 등의 게시) ① 야간경관 시설의 입장시간 등은 입장자가 잘 보이는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매표소 및 야간경관 시설 인근의 고령사랑 상품권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각종 안내사항은 방송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환불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객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관람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2. 야간경관 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어 원활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그 밖의 반환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변상조치)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대가야수목원을 야간경관과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료로 운영 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입·세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고령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계를 기준으로 입장객을 추론하고 구축되는 시설 재원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추정

○ 세부내역

구분	비 목	산 정 기 준	비고
세입	운영수입	- 관내 방문객 수(기준연도 2023년) × 20% ※ 4년차 까지 10% 증가, 5년 이후 10% 감소	유료입장 기준
세출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 (※ 시급 10,030원) ※ 연간 2% 임금상승률 반영	
	운영비	- 공공요금 - 유지보수비(2 ~ 8% 연도별 차등 적용)	
	마케팅 비용	- 이벤트 행사비, 광고비(tv, sns)	
	리뉴얼 비용	- 콘텐츠 리뉴얼 비용 (개장 3년 후 2년마다 최초 사업비의 10%정도)	
	지역상품권	- 상품권 환전 및 제작 수수료 (※유료입장객 5천원 환급 기준)	

※ 산정기준 증빙상세 별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입 (a)	○시설운영 수입	700	1,320	1,452	1,597	1,437	6,506
	소계(a)	700	1,320	1,452	1,597	1,437	6,506
세출 (b)	○인건비	64	97	99	101	104	465
	○운영비	69	194	331	333	470	1,397
	○마케팅비	200	100	200	100	200	800
	○리뉴얼비	-	-	450	-	450	900
	○지역상품권	359	677	745	819	737	3,337
	소계(b)	692	1,068	1,825	1,353	1,961	6,899
□ 총 비용(a-b)		8	252	△373	244	△524	△393

4. 재원조달 방안 : 입장료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군비)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군비		-	-	373	-	524	897
합계		-	-	373	-	524	897

5. 부대의견

- 2023년 관광객의 20%를 유료 입장객으로 추정하였으며,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감면 정책으로 유료입장객 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콘텐츠 노후 및 관광여건 변동에 따라 3년 이후부터 시설을 리뉴얼하고 5년차부터는 입장객이 감소할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 하였음
- 유료입장객 감소 및 시설 리뉴얼 등의 여건에 따라 군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6. 작 성 자 : 관광진흥과 지방시설서기 김상준 (☎ 054-950-6672)

□ 비용추계 산출 근거

○ 운영수입 추정

1. 연도별 유료입장객 추정(단위:명)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70,000	132,000	145,200	159,700	143,700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3년 통계인원 620,827명 * 0.2 ≒ 120,000명
 1차년도 추정인원 : 120,000명*7/12월(2025년 6월 이후 유료)
 5년 이후부터 입장객 감소를 고려하여 추정함

○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단위:원)

구분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	소계	주휴수당	월급(원)
인건비/명	10,030	5	27	1,354,050	240,720	1,594,770

※ 연간 인건비 추정 1,594,770 * 5명 * 12월 = 95,686,200원
 2025년 인건비 1,594,770 * 5명 * 8월 = 63,790,800원(5월부터 근무)
 2026년 인건비 95,686,200원 * 1.02 = 97,599,920원

2. 운영비 (단위:백만원)

구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영업배상 책임보험	합계
2025년 (8개월)	65	-	4	69
2026년	98	90	6	194
2027년	100	225	6	331
2028년	102	225	6	333
2029년	104	360	6	470

※ 기존 수목원 운영경비에 야간 운영시간 연장(~22시 까지)으로 인한 추정 증가액
 유지·보수비의 경우 외부 시설공사비(경관조명,실물모형,실내조명 등)의
 연차별 증가 요율 적용(0~2년차 2%, 3~4년차 5%, 5~6년차 8%)

3. 마케팅 비용 : 개장 초 및 방문객 감소기 집중 홍보비 및 행사비

4. 리뉴얼 비용 : 개장 3년째부터 2년 주기로 최초 사업비의 10%씩 반영

※ 4,500백만원 * 0.1 = 450백만원

- 최초사업비 : 설계·철거 및 장기 구축물(전기설비, 안내판 등) 을 제외한 총 사업비

5. 지역상품권(단위:원)

구 분	발행매수 (유료입장객)	단가	상품권 환전	제작수수료	합계
2025년	70,000	5,000	350,000,000	9,100,000	359,100,000
2026년	132,000	5,000	660,000,000	17,160,000	677,160,000
2027년	145,200	5,000	726,000,000	18,876,000	744,876,000
2028년	159,720	5,000	798,600,000	20,763,600	819,363,600
2029년	143,748	5,000	718,740,000	18,687,240	737,427,240

※ 제작수수료 : 130원/매(2021~2024년 120원/매, 2024. 12이후 :130원/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중 략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고령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사항은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고령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3천원권<신설 2024.12.26.>

3. 1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2호와 같음)>

4. 5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3호와 같음)>

5. 10만원권<개정 2024.12.26.(중전 제4호와 같음)>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관광진흥과	
연 락 처	054-950-6672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04. 23.(수) 10:00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안 제3조, 제4조)
- 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과오납 처리(안 제7조, 제8조)
- 마. 공사시행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5. 검토의견

-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산정·징수하여 왔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급수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령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은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 2023. 11. 21., 일부개정]

-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12. 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6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1. 원인자부담금의 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손괴자부담금의 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복구공사 단가 계약금액 및 장비 사용료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수도시설의 세척 및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3.2 \times A \times P^{\frac{1}{2}} \times h$
[Q =유량(m^3), A =누수부위 면적(cm^2), P =수압(kg/cm^2), h =시간]
다만, 누수시간은 누수 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한다.
 - 나.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A \times L$
[Q =유량(m^3), A =관 단면적(m^2), L =관연장(m)]
4. 운반급수시 운반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5. 도로복구비는 고령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과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에 의하며,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계사용 및 인건비 등 제조요경비로 한다.

6.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도로결빙 방지작업의 결정은 사업소장이 한다. 다만, 결빙 또는 결빙 방지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및 손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중기운임 및 직원의 경비는 해당년도 경상북도 건설 공사설계 지침서에 따라 산정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작업을 수행한자로서 그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한다.
 - 가. 복구작업 감독자
 - 나. 급수조절 등 작업자
 - 다.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 라. 급수차 운행안내자
 - 마.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8.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등은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과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으로 한다.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경상북도고령군규칙 제1475호, 2023. 12. 31., 전부개정]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수도 시설물 손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⑥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18.)

제13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 부담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 설명

-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총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첫번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두번째 원인자가 수도공사를 신청하는 절차,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및 징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공사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부과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사용되어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 예고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를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하기 위해 정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일

환경과장 이 성 구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일자 : 2025.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의 안 번호	
-----------	--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제정)이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안 제3조~제4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 (안 제5조~제6조)
-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과오납 처리(안 제7조~제8조)
- 원인자부담공사 시행(안 제9조)

3.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4.11.07. ~ 11.29(22일간)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 통과(2025. 2. 4.)

제 출 자	고령군수 (환경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상복구비”란 손괴(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사업자가 단수(斷水)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도로복구비”란 손괴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 수도시설의 공사(이하 “수도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수도공사 또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작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출장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인력 또는 차량을 동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출장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등의 사항을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별 부과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대규모개발사업 및 단위개발사업(이하 “부과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비용
2.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
3.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함이 없이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급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급수량의 증가분에 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 예방에 드는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 및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그 밖의 홍보비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단위단가(제3조제1항 제1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사업 분류별 수도물 사용량의 추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 규모(관경 및 시설용량 등)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협의 및 별표 2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누수 및 퇴수와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에 대한 요금: 「고령군 수도 급수 조례」 별표 3의 업종별 사용요금 표를 따라 산정하되, 누수 및 퇴수의 추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를 것
3. 급수차의 사용경비
가. 운수사업자와 급수차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그 밖의 경우: 통상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급수차의 사용경비의 최소금액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4. 도로결빙 방지비용: 도로결빙 방지활동을 위한 차량의 사용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
5. 출장경비: 차량에 대한 경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따라 산정하고, 인력에

대한 경비는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6. 지원경비: 수도사업자를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것

7. 홍보비: 홍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또는 분담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수도공사의 원인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수도공사의 시공 전에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를 우선 실시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수도공사에 드는 제반 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시행에 기여한 비율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연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성질상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납부 받은 원인자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이하 “반환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액의 반환등을 하려는 경우 반환등의 사유, 차액의 산출 근거 및 반환등의 절차 등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착오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자에게 해당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공사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을 긴급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 복구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시설분담금 및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한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 징수, 환급 및 추징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대별 분담금”을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대별로 분담금”을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기준(제3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과 단위개발사업(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위개발사업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과 같다.(단,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수도공급이 필요하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그 실시계획의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등)

바. 그 밖에 주거·숙박·판매·영업·교육·복지·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2. 단위개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의 건축사업

가. 주거시설

-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의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바. 그 밖의 시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4)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5) 운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6)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7)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8)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9)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0) 위탁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1)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2)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4)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6)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7) 교정및군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8) 방송통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9) 발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0) 묘지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1) 관광휴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2)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3) 야영장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수도공급이 필요하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순자산}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순자산을 말한다.
-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추가사업비란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 및 증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라.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마.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	산정기준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초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순자산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이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 추가사업비]

-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순자산을 말한다.
-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추가사업비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 추가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구분	산정기준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초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순자산 ×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이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m³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사항

가. 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진 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라.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의 결정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한다.

2.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당부담액을 말한다.

-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 자산 × (구경별적수 합계 / 총적수 합계)
- 2) 구경별적수 = 특정구경수량 합계 × 하젠 윌리엄스 공식에 의한 보정계수
- 3) 전당부담액 = 구경별부담액 / 구경별 전수

* 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2호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또는 2호 이상의 주택으로 집단화된 택지를 조성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다.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하여 부과·징수하고,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 시 설치할 단일 수도계량기 구경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부과·징수한다.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추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세대수 × 2.12인 × 0.300m ³ /인 · 일 × 첨두부하율
	숙박시설	건축연면적(m ²) × 0.0242m ³ /m ² · 일 × 첨두부하율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m ²) × 0.0083m ³ /m ² · 일 × 첨두부하율
	의료시설	건축연면적(m ²) × 0.0224m ³ /m ² · 일 × 첨두부하율
	판매시설	건축연면적(m ²) × 0.0218m ³ /m ² · 일 × 첨두부하율
	기타시설	건축연면적(m ²) × 0.0124m ³ /m ² · 일 × 첨두부하율

비고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장시설 및 창고시설 등 단위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돗물사용량 추정치를 비교하여 더 큰 것을 적용한다.
4. 첨두부하율은 고령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 추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이 있는 경우의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frac{1}{2}$$

Q1 = 초당 손실수량(m ³ /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 ³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A = 면적(m ²) = 10,000a(cm ²)
∴ C = 0.666 × 0.97 = 0.64	H = 수두(m) = 10p (수두 10m는 수압1kg/cm ² 에 해당)
g = 중력가속도(9.8m/sec ²)	
p = 수압(kg/cm ²)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체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경우(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 ³)	A = 면적(m ²)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수도법」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 경 과	
연 락 처	054)950 - 6534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환경과장)
제출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방식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를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 처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수 예고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2025. 2.21.~3.13(20일간)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정수처분)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1조(정수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u>

<관련 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 경 과	
연 락 처	054)950 - 6532



제 안 설 명

○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 령 군
(건설과)

건설과장 김 규 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군과 한국도로공사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우리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물동량 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23년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2024년도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고속도로와 문화관광지 간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에 따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은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 대구방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 위치는 광주대구선 고령IC와 동고령IC 구간내 대가야읍 외리 일원으로
- 협약의 범위는 하이패스IC 설계, 인허가, 보상, 공사, 유지관리 등입니다.

- 사업의 추진 방식은
우리군에서 보상업무와 국가유산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관리, 영업시설 설치를 시행합니다.
-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보상비, 부채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며,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검증단계에서 검토된 사업비는 124억원이며,
우리군이 73억원, 한국도로공사가 51억원입니다.
(고령군 : 접속도로 19억원, 보상비 13억원 / 도로공사 : 영업시설 10억원/
공동부담 : 본선공사 각 41억)

업무협약을 통해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최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건설과장 김 규 동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04. . (제 회)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건설과장)
제출 연월일	2025. 04. .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I 사업목적

-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물동량 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및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
- 물류비용 절감,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특히, 지산동 고분군, 고도지구 등 주변 관광지 접근성 제고

II 협약 체결 [안]

- 일 시 : 2025. 4. 23.(수) 15:00~15:5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이사회의실
- 협약서(안)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업무 분담 방식
 - 고령군 : 보상업무와 국가유산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
 - 한국도로공사 :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관리, 영업시설 설치
 - 사업비 부담
 - 고령군 : 보상비, 부체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비
 - 한국도로공사 : 영업시설 설치비
 - 공동 부담 : 본선공사,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나머지 사업비
 - 준공 시 유지관리 경계
 - 고령군 : 접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연결로 포함)

Ⅲ 사업개요

- 위 치 :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일원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2호 대구광주선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내용 : 단방향(대구방향) 하이패스IC 1개소
- 사 업 비 : 124억원(한국도로공사 51, 고령군 73)

(단위:억원)

구 분		합계	한국도로공사	고령군
공사비	본선공사	82	41	41
	접속도로	-	-	19
	소계	101	41	60
영업시설		10	10	-
보 상 비		13	-	13
합 계		124	51	73

- 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 및 우리군

※ [사업비분담 관련 규정]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기타 비용부담 등)

- ①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설치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지자체 요구에 따라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분담한다.
 1.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2. 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하며, 총사업비에서 영업시설 설치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가칭) 대구방향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안'



고령군



한국도로공사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가칭) 대구방향 설치·운영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해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최대 적재 중량 4.5톤 미만 화물차가 고속국도 상의 본선 또는 연결로에 직접 연결하거나 휴게소,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나들목을 말한다.
- ②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가칭) 대구방향 설치·운영 사업”은 광주대구선 본선과 접속도로(고령군 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IC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③ “연결로”는 고속국도 본선(휴게소 등), 하이패스IC 영업시설과 접속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개량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④ “접속도로”는 고속국도 연결로와 지역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고령군에서 별도로 설치·개량하거나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⑤ “영업시설”은 IC 이용차량의 요금수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하이패스 시스템, 건축물, 부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⑥ “사업비”는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수탁 수수료를 말한다.
 1. “보상비”는 용지보상비 등 직접 보상비와 감정평가비, 지장물이설비 등 간접 보상비로 구성된다.
 2. “부대비”는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비(자문, VE, 심의 등), 홍보비(착·준공식 등), 감리비,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감리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3. “수탁수수료”는 고령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비용은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기준(한국도로공사)」에 따른다.

제3조 (사업내용)

- 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역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협약을 이행한다.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가칭) 대구방향 설치·운영 사업
 2. 위치 : 광주대구선 고령IC~동고령IC 사이
* (붙임) 하이패스IC 사업 노선도
 3. 범위 : 하이패스IC 설계, 인허가, 보상, 공사, 유지관리 등
 4.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준공시까지(유지관리는 준공 이후까지 포함)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추진방식)

- ①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유료화(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사업의 이용차량에게 통행료를 징수)를 조건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
- ② 고령군은 본 사업의 보상업무, 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 업무 등을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제영향평가 포함), 인·허가(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 제외), 공사관리, 영업시설 설치를 시행한다.
- ③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연결로와 접속도로의 경계를 유지관리 경계로 결정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하며, 준공과 동시에 각자 구간(접속도로-고령군, 고속국도(연결로 포함)-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유지관리한다.

제5조 (사업비의 확정)

- ① 사업비는 실시설계시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준공 후 확정하며, 제12조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 ② 실시설계 이후 지가·물가 변동, 낙찰 차액, 설계변경, 민원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한다.

제6조 (사업비 부담 및 관리)

- ① 사업비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22.10)」에 따라 고령군은 본 사업 관련 용지보상비, 지장물 이설비 등 보상비와 접속도로 공사비,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② 한국도로공사는 고령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의 납입 및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자금계좌를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 ③ 사업비 예치에 따른 발생 이자는 제②항에 따른 자금계좌에 적용되는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7조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 ① 고령군은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용역 발주 전 납부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완료 후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을 고령군에 통보한다.
- ②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연차별 투입되는 사업비 및 이체시기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고령군은 결정된 사업비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6조 제②항에서 정한 지정 계좌로 예치한다.
- ③ 한국도로공사는 제②항에 의한 사업비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시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공기 연장) 등 추가비용은 고령군에서 부담한다.

제8조 (인·허가 및 민원처리)

- ①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허가 업무(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 제외)를 수행하며, 고령군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실시설계, 보상, 건설공사 등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은 해당 업무별 시행주체가 주관하여 처리하며, 상호간 적극 협조한다.
-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IC 위치 선정, 추가 연결로 설치 요구, 하이패스IC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의 이용 요구 등 사업계획과 관련한 민원은 설치 요구자인 고령군에서 처리한다.

제9조 (실시설계 및 타당성재조사)

- ① 실시설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되, 고령군과 합의하여 확정한다.
- ② 실시설계 확정 이후 관련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4조의 사업 추진방식과 제6조의 사업비 부담조건에 따라 각자의 책임분야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련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 ③ 실시설계 사업비가 물가·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타당성조사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장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타당성조사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비를 고령군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타당성재조사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업무)

- ① 간접보상, 지장물보상,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 보상업무 및 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및 관련 조사업무는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국토교통부) 명의로 하며, 제14조 제①항에 의해 고령군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는 고령군 명의로 한다.

제11조 (공정관리)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계약금액 조정, 민원 처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고령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준공 및 사업비 정산)

- 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의 준공일 또는 협약 해제·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고령군에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비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시점부터 추가 납부 또는 환불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제2조 제⑥항의 수탁수수료는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기준(한국도로공사)」에 따라 고령군에서 부담하는 준공사사업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한다.
- ④ 고령군은 제①항의 관계서류를 검토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후 14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진행상황 통지)

- 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착공, 준공 등 사업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령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

- ①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발주 전까지 소유권 및 유지관리구간을 최종 확정하고, 준공과 동시에 각자 소관 구간에 대하여 유지관리(하차 관리 포함) 책임을 진다.
- ② 실시설계단계에서 교통분석 결과에 따라 하이패스IC 설치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확장 및 개량사업(LCS 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한다.
- ③ 연결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고령군은 고령군의 전액 비용부담으로 접속도로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개통 이후 하이패스IC 진출입 교통량 증가로 연결로 차로 확장 등 개량이 필요한 경우,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22.10)」에 의거하여 본 협약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석)

협약의 해석에 있어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상호간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 합의 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6조 (협약의 이행)

- ①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필요시 본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제·해지)

- ① 본 협약체결 이후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상대방의 협약내용 미이행으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미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사자들간에 본 협약을 지속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약은 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협약내용 미이행으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에 대한 귀책이 있는 기관에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진다.
- ④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용은 협약해제·해지시점까지 투입된 비용과 원상 복구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물가변동 고려)를 포함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효력발생 시기)

- ① 본 협약은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단, 고령군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각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일

고령군
군수 이남철(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설과	
연 락 처	(054)950-6622



제 안 설 명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한 혜 연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고령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민간 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5년

이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 운영의 기대효과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의 수행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의료 환경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위탁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으로 요양병원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으로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며,

-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존치 실효성이 없는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과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보건소 수행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제6조제1항제1호~8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일

보건행정과장 한 혜 연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령군수 (보건행정과장)
연 월 일	2025. .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5.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안이유

고령군립요양병원은 2004. 5월에 설립, 의료법인 영암재단 고령영생병원 (이하 고령영생병원)의 위·수탁기간이 2024. 8.31.일자로 만료되어, 2024. 9. 1.부터 고령군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고령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근 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고령군립요양병원(설립일 : 2004. 5. 7.)
 - 소 재 지 :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헌문리 202-1, 202-18)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372㎡, 토지·건물 - 군 소유)
 - 주요시설 : 87병상(2025. 2. 28. 기준 : 76병상 운영, 병상 가동율 88%)

층별	병실 병상수	그밖의 시설	비 고
합 계	20실 87병상		· 2021년 그린 리모델링 · 2025년 기능보강사업(26억) - 증축 및 리모델링 - 의료장비 구입
4층	6실 22병상	린넨실	
3층	7실 27병상	임상병리실, 폐기물 보관실	
2층	5실 20병상	간호스테이션, 린넨실, 조제실	
1층	2실 18병상	원무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지하1층		기계실 소방시설	

- 인력현황

구분	합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인력
		의사	한의사										
인원(명)	40	2	1	10	11	1	1	1	1	2	1	4	5

※ 행정 인력(시설 2, 미화 1, 총무 1, 원무 1)

○ 민간 위탁 주요내용

(※ 근거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가. 위탁사무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 나. 위탁기간 : 2025. 7. 1. ~ 2030. 6. 30. (5년간, 재계약 가능)
- 다.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라. 위탁업무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 관리
- 마. 위탁조건
 - 공유재산(병원 부지 및 건물) 사용료 무상 가능
 - 독립회계로서 독립채산제 운영
 - 운영비 지원 없음. 다만, 준수 필요 인정시, 일부 지원 가능
 - 병원 운영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4.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4월 : 군의회 관리 위탁 동의 절차 이행
- 2025년 5월 :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5년 6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사용료 감면(안)
- 2025년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 근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위탁사무의 공공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붙임 1.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 위탁 추진계획 1부.
2.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 1부.
3. <참고자료> 관련 법규 1부. 끝.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의 수행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의료 환경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요양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위탁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으로 요양병원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I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II 추진배경

- 2024. 8. 31.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 계약 종료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공고 유찰 (5회)
- 2024. 9. 1.부터 고령군 직접 운영

III 일반현황

- 시설명 : 고령군립요양병원(설립일 : 2004. 5. 7.)
- 소재지 :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헌문리 202-1, 202-18)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1,372㎡, 토지·건물 - 군 소유)

● 주요시설 : 87병상(2025. 2. 28. 기준 : 76병상 운영, 병상가동율 88%)

층별	병실 병상수	그밖의 시설	비 고
합 계	20실 87병상		· 2021년 그린 리모델링 · 기능보강사업(26억) - 증축 및 리모델링 - 의료장비 구입
4층	6실 22병상	린넨실	
3층	7실 27병상	임상병리실, 폐기물 보관실	
2층	5실 20병상	간호스테이션, 린넨실, 조제실	
1층	2실 18병상	원무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지하1층		기계실 소방시설	

● 인력현황

구분	합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인력
		의사	한의사										
인원(명)	40	2	1	10	11	1	1	1	1	2	1	4	5

※ 행정인력(시설 2, 미화 1, 총무 1, 원무 1)

● 위·수탁 및 운영 현황

기수	사업기간	사업자	운영방법
1차	2004.5.27.~ 2009.5.26.(5년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민간위탁(기부채납 계약)
2차	2009.5.27.~ 2014.5.26.(5년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민간위탁(기부채납 재계약)
3차	2014.5.27.~ 2019.5.26.(5년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민간위탁(기부채납 재계약)
4차	2019.5.27.~ 2024.8.31.(5년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민간위탁(기부채납 재계약)
5차	2024.9.1. ~ 현재	고령군	직접운영

IV 세부 추진계획

- 위탁사무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 위탁기간 : 2025. 7. 1. ~ 2030. 6. 30. (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탁업무 (제3조 업무)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 등

● 이익금(제11조 회계 및 결산)

-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처리

※ 다만, 군수가 필요 인정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조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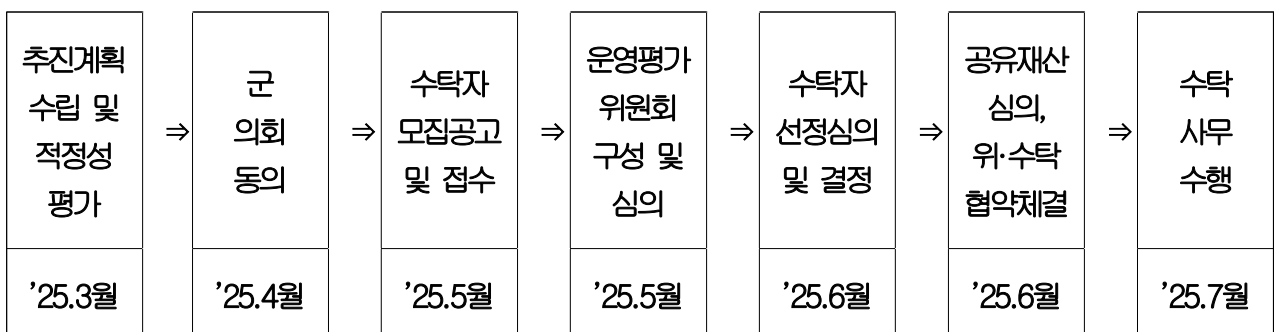
● 위탁 기간(제5조 위탁 기간)

- 5년, 재계약 가능

● 신청 자격(제8조 수탁자의 자격)

-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 병원 개설은 의료법에 따름)

□ 추진절차



□ 세부추진 일정 및 내용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5. 8. ~ 5. 21. (14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접수기간 : 2025. 5. 8. ~ 5. 21. (14일간)
- 접수장소 : 고령군 보건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주말·공휴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구성시기 : 2025. 5월 ~ 6월
- 위원구성 :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임기 : 해당 안건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주요임무 : 고령군립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

●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심사

- 개최일시 : 2025. 6월 중
- 참석대상 : 고령군 민간 위탁 심의위원
- 심의내용 : 고령군립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5. 6월 중
- 심의내용 :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사용료 감면(안)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5. 6월 중
- 협약기간 : 2025. 7. 1. ~ 2030. 6. 30. (5년간)
- 협약내용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전반

V 행정사항

- 민간 위탁 군의회 동의 : 2025. 4월
-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5월 ~ 6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6월
- 위·수탁 협약서 작성 : 2025.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6월

VI 기타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위탁자 및 수탁자(기관)은 시설물, 인력 등 인계·인수서 작성
 - ※ 인계 시, 항목별 위탁 대상 사무(시설) 물품관리대장 작성·전달
 -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운영 개시 전에 수탁사무(문서, 시설·장비·비품의 위탁재산, 인력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상호 협의 후 조치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군립요양병원 운영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 기본 검토사항

위탁사무명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위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주요 공공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필요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8. 31 : 기존 수탁자의 위·수탁 계약 만료 ○ 2024. 9. 1.부터 직접 운영
위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여부 검토 ○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위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내용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 ○ 법적 근거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 진료 등 ○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군립요양병원(설립일: 2004. 5. 7.) - 소재지 :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헌문리 202-1, 202-18)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1,372㎡, 토지·건물 군 소유)
위탁기간	○ 5년(2025. 7. 1. ~ 2030. 6. 30.)
수탁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유찰된 경우,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역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법적 근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 검토내역 : 7개 기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검토 기준		검토 내용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 용역, 보조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의거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치매관리법」,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요양 등을 위하여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의 필요성이 높음																																																		
	3. 경제적 효율성		- 위탁자가 직영 운영시, 직원 채용, 임금 및 처우 개선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수탁자의 전문성, 충분한 경험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관리 사무 수행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8조(성과 및 서비스 평가 시행) : 성과·서비스평가 기준협약 체결 및 1회/1년씩 평가 시행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 :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통한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경상북도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총 15개소(도립4, 시립5, 군립6) 중 위탁 14개소, 직영 1개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도립(4)</th> <th colspan="2">시립(5)</th> <th colspan="2">군립(6)</th> </tr> <tr> <th>위탁기관</th> <th>수탁자</th> <th>위탁기관</th> <th>수탁자</th> <th>위탁기관</th> <th>수탁자</th> </tr> </thead> <tbody> <tr> <td>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td> <td>포항의료원</td> <td>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td> <td>우석의료재단</td> <td>고령군립요양병원</td> <td>직접운영</td> </tr> <tr> <td>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td> <td>신애의료재단</td> <td>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td> <td>구미교육재단</td> <td>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td> <td>대남의료재단</td> </tr> <tr> <td>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td> <td>안동유리의료재단</td> <td>영주시립노인요양병원</td> <td>일맥의료재단</td> <td>의성군공립요양병원</td> <td>송암의료재단</td> </tr> <tr> <td>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td> <td>성심의료재단</td> <td>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td> <td>삼백의료재단</td> <td>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td> <td>고산의료재단</td> </tr> <tr> <td></td> <td></td> <td>시립문경요양병원</td> <td>학교법인제한학원</td> <td>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td> <td>봉화해성병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td> <td>의료원직영</td> </tr> </tbody> </table>				도립(4)		시립(5)		군립(6)		위탁기관	수탁자	위탁기관	수탁자	위탁기관	수탁자	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항의료원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우석의료재단	고령군립요양병원	직접운영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신애의료재단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구미교육재단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대남의료재단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안동유리의료재단	영주시립노인요양병원	일맥의료재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송암의료재단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성심의료재단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삼백의료재단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고산의료재단			시립문경요양병원	학교법인제한학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봉화해성병원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의료원직영
도립(4)		시립(5)		군립(6)																																																	
위탁기관	수탁자	위탁기관	수탁자	위탁기관	수탁자																																																
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항의료원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우석의료재단	고령군립요양병원	직접운영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신애의료재단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구미교육재단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대남의료재단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안동유리의료재단	영주시립노인요양병원	일맥의료재단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송암의료재단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성심의료재단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삼백의료재단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고산의료재단																																																
		시립문경요양병원	학교법인제한학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봉화해성병원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의료원직영																																																

<p>적정성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요양 등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 볼 수 없음 - 요양병원은 환자의 진료, 요양 등 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이 적정
---------------------	---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 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령군 행정담당)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8.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7조(승인·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상북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고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사무내용<개정 2021.12.15>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성과관리 방안<신설 2021.12.15>
8.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신설 2021.12.15>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15.>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의약관리담당)

제4조(설치·운영)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자격)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54) 950 - 7921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보건행정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안 별표 2)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신설(3,000원)
- 불필요한 제증명발급 수수료 삭제(안 별표 2)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과 납부방법 조례 반영(안 제6조 및 제7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 정비(안 제6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 현실에 맞게 구체화(제1항제1~8호)
 -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추가(제1항제5호)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 3. 17. ~ 4. 7.(의견 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비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5.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2세,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납입하여야 한다”를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치과 및 골다공증 진료 수가

종 목	진 료 내 용	수 가(원)
스 케 릿	치 석 제 거	25,000
불 소 도 포	치아불소도포	5,000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측정	10,000

【별표 2】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수가기준)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원)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	
2.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	
3. 사망진단서	"	500	
4. 건강진단서(채용 및 기숙사)	"	500	
5.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	500	
6.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	300	
7. 건강진단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관련
8. 각종 증명서 1통 초과 발급	"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 수료) ①·② (생 략) ③ <u>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수첩)등 관계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는 경우에는 당 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u>	제5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 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u>보건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u>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u> 1. <u>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 수료</u> 2. <u>방문보건사업 등 의료취약계 층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비</u> 3. <u>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 른 진료비</u> 4. <u>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u> 5. <u>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 자 및 그 2세, 「고령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u>

<신 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입하여야 한
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
료비 및 검사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수수
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
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
-----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삭 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54-950-7902